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고 용 보 험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심각한 경제 불황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해당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유인책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상향

3. 주요내용

가.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경우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상향(안 제21조 제1항단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을 “3 이상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한정한다”를 “해당 지원이 적용되는 기간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가 2020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1년의 범위에서 <u>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한정한다</u>)으로 한다. 1. 2. (생략) ② ~ ⑤ (생략)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① ----- -----. ----- ----- ----- ----- <u>3 이상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u> ----- ----- <u>---해당 지원이 적용되는 기간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u>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7